

# 韓 · 美 FTA 관련 주요 과학기술정책 이슈와 시사점

백철우, 손병호

kistep

■ 연구배경 / 1

■ 한미 FTA 추진경과 및 미국측 요구사항 / 3

■ 한미 FTA 관련 주요 과학기술정책 이슈 / 6

■ 한미 FTA를 대응한 과학기술정책 추진방향 / 23

■ 참고문헌 / 30



# 발간사

한국경제는 세계화의 큰 흐름속에 격변하고 있으며, 그 핵심이 바로 FTA라 할 수 있다. WTO의 다자간 협상인 DDA가 결렬됨에 따라 FTA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세계 경제의 추세로 자리잡았다. 일각에서는 대상국별 혹은 지역별로 다른 규정이 적용돼 서로 얽히고 설키는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의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어 어느 때보다 찬반론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는 한미 FTA가 서비스업 및 수출 강화를 통해 한국경제를 선진경제화 할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자칫 성급한 추진은 한국경제를 오히려 도태시키는 위기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에 대한 찬반론도 중요하지만, 협상이 진행 중인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 가느냐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하여 한미 FTA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한 자료가 부족하며, 일반 국민들의 이해도도 낮은 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이슈페이퍼는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에게 중장기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과학기술정책 이슈를 좀 더 차분하고 실리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이며, kistep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2006년 9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유 희 열



# 1

## 연구배경

### ■ 미국은 자동차, 무선통신 등 한국 주력제품의 수출시장인 동시에 주요수출품 관련 부품 및 장비의 주요 수입시장임

○ 2000년 기준으로 미국이 가장 높은 교역비중을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에는 중국, 일본에 이어 3번째 교역국이 됨 (한국무역협회, 2006)

※ 2000년 기준 교역비중 : ▲미국 20.1% ▲일본 15.7% ▲중국 9.4%  
 2005년 기준 교역비중 : ▲중국 18.4% ▲일본 13.3% ▲미국 13.2%

- 교역비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무선통신, 반도체 등 한국 주력제품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미국 시장의 가치가 높음
- 미국 수출품목 중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 한국의 3대 주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4%에 달함
  - 주요 수입품목은 반도체, 기계장비, 부품 등으로서 한국의 주요수출품의 중간재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함

〈표 1〉 한미 품목별 교역구조

(단위 : 백만달러, %)

수출품목('05년)	금 액	비 중	수입품목('05년)	금 액	비 중
자동차	8,736	21.1	반도체	5,692	18.6
무선통신기기	5,838	14.1	반도체제조용장비	2,274	7.4
반도체	3,630	8.7	항공기및부품	1,646	5.3
섬유제품	2,172	5.2	계측제어분석기	1,170	3.8
자동차부품	2,101	5.0	컴퓨터	781	2.5
컴퓨터	1,369	3.3	정밀화학원료	749	2.4
의류	1,046	2.5	곡실류	726	2.3
철강관	815	1.9	원동기및펌프	659	2.1
고무제품	799	1.6	기초유분	600	1.9
<b>총 계</b>	<b>41,343</b>	<b>100.0</b>	<b>총 계</b>	<b>30,586</b>	<b>100.0</b>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WTO/DDA협상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각국의 통상정책이 다자간협상에서 FTA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EU·미국 등의 선진국과 인도·브라질이 대표하는 G20 개도국그룹 사이에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 7월 24일 DDA 협상 잠정중단을 선언함
- DDA 협상의 재개여부를 떠나 각국 통상정책이 DDA 협상에서 FTA로 중심을 옮기게 될 가능성이 높음 (KOTRA, 2006)

■ **미국 시장의 가치와 국제 무역흐름을 고려할 때, 현재 추진 중인 한미 FTA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하고 빈틈없는 준비가 요구됨**

- 한미 FTA가 사회·경제 전반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속에서, FTA 체결 그 자체보다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 가느냐가 관건임
- 사회 각 분야에서 한미 FTA 대책 및 협상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반면, 중장기 성장동력과 관련된 과학기술은 그 중요성에 비해 일반국민 및 정책입안자에게 관심 및 이해도가 낮은 상황임
- 따라서,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각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논의되었던 한미 FTA 관련 주요 과학기술정책 이슈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협상의 주요 전략 및 중장기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미국의 세계 수입시장 비중**

- 미국의 수입규모는 1.7조 달러로 세계수입시장의 21.8%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 중국 및 ASEAN 10개국의 수입규모 합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 ('04년 기준)  
△미국: 21.8% △EU(역외): 18.3% △중국: 8.0% △일본: 6.5%
- 양적인 측면 외에도 미국시장은 첨단제품을 비롯한 모든 제품의 시험무대(test bed)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큼

## 2

## 한미 FTA 추진경과 및 미국측 요구사항

- 올해 2월 3일 개시된 한미 FTA 협상은 현재 3차 협상이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까지 총 다섯 차례의 협상이 진행될 예정임

〈표 2〉 한미 FTA 추진경과

일 시	주요내용	비 고
2006. 2. 3	○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	
2006. 3. 31	○ 『연례 통상정책 보고서』, 『2006년 무역장벽 보고서』 발간	USTR (미 무역대표부)
2006. 5. 4	○ 협정초안문 교환	
2006.6. 5~9	○ 한미 FTA 1차 협상	워싱턴
2006. 7. 10~14	○ 한미 FTA 2차 협상	서울
2006. 8	○ 상품양허안 교환 - 상품, 농업, 섬유 등 3개 상품무역 분과의 양허안 교환(15일) - 서비스·투자 분과의 유보안에 대한 개방요구 목록(Request list) 교환 (23일) - 금융서비스 분과의 유보안 교환 (31일)	
2006. 9. 5~9	○ 한미 FTA 3차 협상	시애틀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06년 3월 1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 통상정책 보고서』와 같은 달 31일에 발표한 『2006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관련 미국측 요구사항을 강력히 언급하고 있음
  - 『연례 통상정책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간 통상협상에서 FTA 체결을 가장 중요한 정책의제로 선정함
  - 특히, 『2006년 무역장벽 보고서』는 그간 미국에서 진행된 공청회 및 재계의 주장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 USTR의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측의 요구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 참조)

- USTR의 보고서가 가장 많은 요구사항을 담은 분야가 서비스 부문이며, 구체적으로는 방송업과 법률업에 대한 개방 및 투자제한 완화, 우체국 보험에 대한 정부의 특혜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자국의 수출업자와 투자자들이 한국에 진출해 활동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한국의 법이나 정책에 대해 개정 및 철회를 강하게 요구함
  - 외국인 투자제한 제도, 자동차 관세 제도, 신약의 약가제도 등

〈표 3〉 USTR 보고서 중 한국 관련 주요 내용

분야	주요 요구 사항
수입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관세 인하</li> <li>○ 수산물 수입쿼터를 국내 생산업자가 관장하는데 대한 문제제기</li> </ul>
기준, 검사, 라벨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도한 위생검역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li> <li>○ 뼈를 포함하고 있는 소고기의 수입 재개</li> <li>○ 유기농산물 표시 라벨링 제도의 개선</li> </ul>
정부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정부·공기업의 건설서비스 분야 개방 폭 확대</li> </ul>
수출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 및 OECD 관련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li> <li>- 한국은 반도체, 통신장비 등 수출지향적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li> <li>- 하이닉스 반도체와 제지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li> </ul>
지적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재산권 단속시 미국기업 동반 및 압수수색 내용 열람</li> <li>○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자 사후 50년에서 70~95년으로 확대</li> </ul>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 판매독점 해소</li> <li>○ 지상파 및 케이블 TV의 외국 프로그램 비율 및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li> <li>○ 법률시장의 단계적 개방</li> <li>○ 우체국 보험에 대한 특혜 시정</li> <li>○ 외국계 은행 지사들이 대출한도를 결정시 본점의 자본금도 인정</li> </ul>
투자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규제의 투명성 제고</li> <li>○ 국영기업과 위성 및 케이블 방송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관세인하, 세제 단순화, 세부담 경감</li> </ul>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적 신약에 대한 약가산정 및 급여 절차상의 투명성 개선</li> <li>○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검토 중인 약가 재평가 제도상의 약가 산정방법에 대한 우려 제기</li> </ul>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통신 사업자의 기술선택과 관련한 정부의 지속적 영향력 행사에 대한 우려 제기</li> <li>○ 추가적인 통신 서비스 시장의 개방,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확대</li> </ul>

■ 한미 FTA 1, 2, 3차 협상의 주요 결과는 <표 4>과 같으며, 협상 초기인 단계로 대부분의 의제에서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임

<표 4> 1, 2, 3차 협상의 주요 결과

분야	1, 2, 3차 협상 주요 결과
상품무역	○ 원목 수출통제 및 선박예외를 주장하는 미국과 이견 ○ 5단계 양허 이행기간 등 양허안 틀 합의 (즉시·3년·5년·10년·기타 등)
원산지·통관	○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수출입자 협력 의무 및 통관신속화 조치 합의 ○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원산지 허용 여부 이견 첨예
농산물	○ 한국이 주장한 세이프가드 및 관세할당 제도에 대한 이견으로 양허안 틀 합의 무산 ○ 미국은 민감성이 덜한 품목부터 양허 수준의 개선을 요구
섬유	○ 엄격한 원산지 규정도입 및 특별세이프 가드 도입을 주장하는 미국측 주장에 반대하여 합의 무산
지적재산권	○ 저작권 보호기간에 연장(50년→70년)에 대한 의견 충돌 지속 ○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집행강화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고 수정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
서비스	○ 100개 항목에 대한 유보안 교환 ○ 신금융 상품별 감독당국 허가제 적용 합의 ○ 국경간 거래에서 소매금융 제외 ○ 전문직자격 상호인정에 대해 우리측 제안문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
의약품	○ 한국측 건강보험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에 대해 미국 강력 반발
통신	○ 기간산업 외국인 지분제한 및 기술선택의 자율성에 대한 이견 첨예
자동차	○ 세제와 기술표준 이견 첨예

### 3 한미 FTA 관련 주요 과학기술정책 이슈

- 한미 FTA는 사회·경제 전반의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기 때문에 한국의 성장 동력인 과학기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 및 정책입안자에게 문제의 심각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상황임
-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정부의 기술선택, 신약개발, 정부의 산업지원, 지적재산권 등 한미 FTA에서 논의될 주요 과학기술 관련 이슈 및 이에 따른 해당 산업의 파급효과를 제시하고자 함

#### 이슈 1 공공기관을 통한 산업지원 금지

- 공공기관(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을 통한 산업지원 문제는 크게 「수출보조금」과 「특정기업 육성」의 문제로 구분됨

〈표 5〉 산업지원 금지 관련 미국의 주요 요구사항

분야	주요 요구사항
수출보조금	○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전통적인 수출지향 산업과 반도체, 통신장비 등 차세대 수출지향 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WTO 협상에 맞게 완화
특정기업 육성	○ 일반 상업은행들이 투자하기 주저하는 조선산업 등 고위험 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 중단 ○ 제지 산업에 대한 저렴한 시설투자 대출, 대출보증, 시설확장에 대한 세금혜택 등의 지원 중단 ○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특혜성 대출 및 주식 투자 금지

### ■ 美 FTA 관련 산업지원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WTO의 보조금 문제와 동일

- 2002년 산업은행이 Hynix 채무를 출자전환 및 상환연장 한 것에 대해 미국은 45%의 상계관세를 부과했으며, WTO 분쟁조정패널 2심에서 한국이 패소함 (2005. 6)
  - 지난 2002년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회사채 신속인수권 제도를 이용해 1조 9천억원 상당의 Hynix 채무를 출자전환해 주고, 3조원의 채무는 상환을 연장함
  - WTO 분쟁조정패널에서 1심과 달리, 2심에서 한국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이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한국의 패소를 판결

#### 회사채 신속인수권 제도

- 회사채 만기가 집중 도래할 경우, 회사채의 80%를 산업은행이 총액 인수해 주는 제도
-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0년 말에 한시적(1년)으로 도입

### ■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① 수행주체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어야 하며,
- ② 재정적 기여로 인해 수출업체 또는 생산업체에게 '혜택(Benefit)'이 발생하며,
- ③ 그 수혜대상에 대해서 특정성(Specificity)이 존재해야 함

### 특정성 (Specificity)

□ 특정성은 법률상, 사실상, 지역적 특정성으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만 입증되어도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법률상 특정성 (de jure specificity)

- 법규상 공여당국이 보조금에 대한 접근을 특정 기업·산업으로 명백하게 한정된 경우
- 수혜요건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 객관성을 결여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된 경우

#### ○ 사실상 특정성 (de factor specificity)

- 실제 보조금이 제한된 수의 특정 기업·사업에 사용된 경우
- 특정 기업에 의해 보조금의 대부분이 사용된 경우
- 특정기업에게만 불균형적으로 많은 보조금이 지원된 경우
- 보조금 지급 결정에 있어서 공여기관의 자의적인 재량권이 행사된 경우

#### ○ 지역적 특정성 (regional specificity)

- 지정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특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 ■ 산업은행의 경우 특정성 요건이 논란의 핵심이며, 실제로 Hynix를 비롯한 현대계열사 지원에 있어서 사실상 특정성이 존재하였음

- 실제로 법률상 특정성이 위배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사실상 특정성의 인정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 됨
- 과거 Hynix를 비롯한 현대계열사 지원의 경우, 사실상 특정성이 존재함
  -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에 따른 2조 3,261억원 중 71%가 Hynix를 비롯한 현대계열 회사에 집중 ⇒ WTO 2심 패널에서 보조금 인정을 받게 됨

### ■ 현재 산업은행의 대출정책 및 정부의 기업 지원정책은 한미 FTA 뿐만 아니라 WTO 기준에서도 더 이상 유효한 정책수단이 되기 힘들

## 이슈 2

### 통신산업의 외국인 지분 확대

■ 현재 한국은 ‘기간통신의 외국인 지분 49% 제한’ 및 ‘KT의 외국인 대주주 금지’를 제외하고는 통신서비스 시장을 외국에게 모두 개방한 상태임  
(〈표 6〉 참조)

○ 기간통신사업자 중 외국인 지분이 49%에 달하는 기업은 KT, SKT, 하나로텔레콤 3사 뿐이며, 그 외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인 KTF, 데이콤, LGT는 모두 외국인 지분이 30% 미만에 불과

※ KT, SKT, 하나로텔레콤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지분을 33%에서 49%로 확대한 '99년 이후 한번도 외국인 지분이 49%에 달한 적이 없음

〈표 6〉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시장 외국인 지분제한 현황

구분	2004. 2월 이전	2004. 2월 이후
직접투자 총량제한	○ 49% 이하	○ 49% 이하
직접투자 동일인 제한	○ 제한없음	○ 제한없음
대주주 제한	○ KT 이외 제한 없음	○ KT 이외 제한없음. 5% 미만 소유시 KT도 허용
공익성 심사	○ 유	○ 무

※ 자료 : 강하연 (2006) “한미 FTA 외국인지분 이슈검토”

■ 미국은 예전부터 통신시장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기간통신에 있어서 외국인 지분제한을 51%로 높이거나 완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KT, SKT, 하나로텔레콤 3사의 외국인 지분이 51%가 되는데 소요되는 추가 지분매입 비용은 5,000억~6,000억원에 불과하며, 그 금액도 국내증시로의 순투자액이라기 보다는 다른 기업으로부터의 투자 전이에 의한 포트폴리오 조정에 의할 것임 (〈표 7〉 참조)

〈표 7〉 외국인 지분허용 2% 증가에 따른 외국인 투자 증가액 (억원)

	KT	SKT	하나로텔레콤	합계
최대값	2,460	3,299	331	6,090
최소값	2,142	2,690	220	5,052

※ 자료 : KIET (2005), "한미 FTA 통신서비스 개방 영향분석"

■ 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최대 49% 또는 그 이하로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고 있음

- 외국인 지분 제한이 없는 나라는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정도이나, 스위스는 이미 정부지분이 61.4%에 달하며, 영국과 미국은 지주회사 체제로 되어 있어 외국 투자로부터 구조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미국의 기간통신사업자는 지주회사 체제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자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 안 되어 있어 통신사에 대한 투자는 지주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함. 하지만, 지주회사인 SBC의 막대한 자금규모로 인해 외국인의 주식획득 및 경영간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표 8〉 주요국의 외국인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제한 현황

국가	외국인 직접지분한도	주요사업자에 대한 정부지분율	비고
독일	100%	Deutch Telekom에 정부지분 38%	
노르웨이	100%	Telenor에 정부지분 54%	
스위스	100%	Swisscom에 정부지분 61.4%	
미국	무선 20%	0%	지주회사
영국	100%	0%	지주회사
프랑스	100%	FT에 정부지분 54.43%	
포르투갈	유,무선 25%	Telecom Portugal에 20% 이상 투자시 신고 의무	
말레이시아	유,무선 30%	Telekom Malaysia에 정부지분 30%	
태국	유,무선 20%	TOT 정부보유 100%	
캐나다	유,무선 20%	이사회 80%이상 캐나다	
중국	유,무선 49%	-	
터키	유,무선 49%	Turk Telecom 정부보유 100%	

※ 자료 : KIET (2005), "한미 FTA 통신서비스 개방 영향분석"

■ 미국은 공익성 심사와 Exon-Florio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반면, 우리나라가 '04년도 도입한 공익성 심사는 내용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미국의 공익성 심사에 비해 빈약한 상황임

〈표 9〉 미국의 외국인 투자 견제제도

분야	주요 요구사항
공익성 심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한 비통제지분에 대해 20%만을 허용</li> <li>○ 외국인이 무선통신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가 25%를 초과할 경우 공익성 심사 실행</li> </ul>
Exon-Florio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투자 규제 가능</li> </ul>

### 이슈 3 기술자력의 상호인증

■ 한국과 미국은 모두 APEC 엔지니어제도의 회원국으로서 기술자격을 상호 인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나 미국 주정부가 기술자력의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등록요건인 동등성 기준까지는 회원국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다자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인력시장 개방인 상호인정(면제) 협정은 쌍무협정에 맡겨 둬
-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은 인정·승인받은 공학교육을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국으로 제한하고 있고, APEC 엔지니어에 대한 최종적 활용권한은 개별 주정부가 가지고 있어 동등성에 대한 수용여부가 불투명함
  - ※ 워싱턴어코드는 현재 총 10개국만 정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5년 준회원국으로 가입하여, 2007년 정회원국으로의 승급을 준비하고 있음
  - ※ 미국에서 활동하는 연구인력이 7,290명으로 2000~2001년 대비 2003~2004년에 25%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자격증을 인정받아 미국에 진출한 기술인력은 전무함

#### APEC 엔지니어 제도

- APEC 엔지니어 제도는 국제적인 활동에 충분한 요건을 갖춘 기술자들을 각 회원 국가의 책임하에 등록하고, 등록된 기술자가 상대 국가에서도 자신의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 한국, 미국을 비롯하여 총 13개 국가 회원국임
- 등록요건
  - 인정·승인받은 공학교육 이수
  - 독립적 업무수행 능력(자격)
  - 교육 이수 후 7년 이상의 실무경력
  - 주요 엔지니어링 업무에서의 2년 이상 책임기술자 경력
  - 만족할만한 수준의 계속교육 이행 (3년간 150학점)
- ※ 자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미 FTA와 기술자력의 상호인정”

■ **기술자격 운영제도의 상이함으로 인해 미국이 한국 기술자격 제도의 인정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임**

〈표 10〉 한미 기술자격 운영제도의 주요 차이

분야	주요 요구사항
운영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 교육을 거치지 않고 자격 시험을 통해서 바로 기술자가 됨</li> <li>○ 미국 : 교육, 실무훈련, 자격시험, 등록 및 활용이 단일하게 운영</li> </ul>
인정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 기술자격을 취득하면 별도 절차없이 종신자격을 행사</li> <li>○ 미국 : 1년 단위로 재등록해야 하며, 재등록 미이행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며, 장기간 등록하지 않으면 강화된 재등록 기준이 적용</li> </ul>

■ **기술자격 상호인정을 우리의 공세적 협상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의 활용이 필요한 한편, 기술자격 상호인정에 따른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시장 진입에 대비한 구체적 대응방안 및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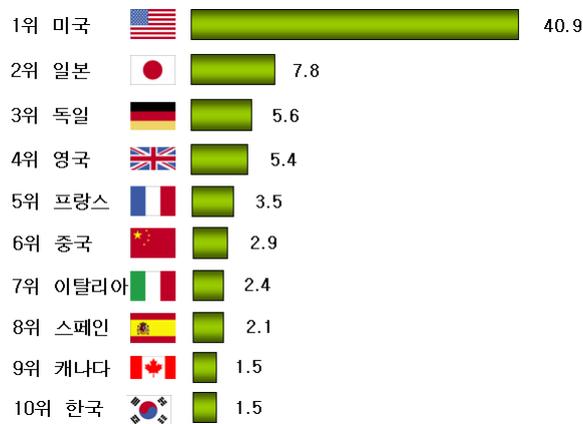
※ 현재 기술사법에 계속교육, 체계적 경력관리 등을 반영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 이슈 4 지적재산권의 강화

■ 지적재산권의 강화는 세계문화콘텐츠 시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미국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 점유율

(단위: %, 2003년 기준)



※ 자료 : 문화관광부

■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국은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보다 한층 강화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중 ‘일시적 저작권’, ‘접근통제적 조치’ 등은 국내에 개념조차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표 11〉 지적재산권 관련 미국의 주요 요구사항

분야	주요 요구사항
단속 및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단속시 미국 기업들의 동행권한 요구</li> <li>○ 사소한 침해행위라도 단속팀의 압수수색 내용을 미국업체가 원하면 열람가능</li> <li>○ 잠정 가치분명령과 일방적 압수명령 등 한쪽 당사자만의 신청으로 법원이 강제집행 제도를 발효</li> </ul>
일시적 저장의 보호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웹서핑 때 자신의 컴퓨터에 타인의 프로그램 등을 임시저장 할 때 생기는 ‘일시적 저작권’도 보호 대상임</li> </ul>
저작권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자권자 사후 50년에서 사후 70~95년으로 확대</li> </ul>
기술적 보호장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근통제적 조치: 암호 또는 접근 코드 등의 기술적 조치를 통한 저작물의 접근 통제</li> <li>- 외국 DVD나 PS 게임 CD의 지역코드 등</li> </ul>
OSP의 책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 침해에 있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면책대상을 유형별로 특정하고 면책 요건을 구체화해 책임을 강화</li> </ul>

## (1) 단속 및 처벌 강화

- 단속 및 처벌 강화로 인한 소송 건수의 증가가 예상되며, 권리자 보호주의에 따라 판결에서도 이전보다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임
  - 단속시 미국기업 동행과 압수수색 내용 열람권 등이 허용되면 관련 미국 기업의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저작권법이 ‘잠정 가처분명령’과 ‘일방적 압수명령’ 등 한쪽 당사자만의 신청으로 법원이 발효할 수 있는 강제집행 제도를 통해 권리자 보호를 중시하고 있으며, 법정 손해배상 제도 역시 권리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한국과 달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 예상됨

## (2) 일시적 저장의 보호문제

- 일시적 저장(복제)이란 컴퓨터 RAM상에 복제되는 것과 달리, 스트리밍이나 캐싱서비스 이용시 임시폴더에서 받아 플레이하는 행위를 지칭
  - 미국은 이를 저작권법상에 포함시켜 국익을 대변하고 있지만, WIPO 저작권 조약 초안 7조와 WIPO 실연·음반 조약(WPPT) 초안 7조와 14조에서 삭제되는 등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저작권이 아님
  - 한국의 현행 저작권법은 일시적 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저작권법의 범위를 유형물에 한정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제공임대(ASP)나 서버터미널, 스트리밍 방식 등을 통해 일시적 복제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WiBro 상용화시 더욱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향후 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3) 저작권 연장

#### ■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재 저작권자 사후 50년에서 70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나 이는 국제적 기준에 크게 벗어나는 것임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정한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사후 50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준수하여 저작자 사망 5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음
- 반면, 미국은 저작자 사후 70년 이상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호주와의 FTA에서도 이를 관철시켰음

※ 미국은 『소니보노 저작권 연장법』을 통해 40여 만개의 저작물이 공공자산화 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자국내에서도 2004년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미키마우스’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의미에서 『미키마우스법』이라 불릴 정도로 거센 비판에 직면하였음

#### ■ 저작권 연장은 추가적 비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많음

-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 더 연장될 경우 지금까지는 저작권료를 안내고 번역·출판했던 미국작가(1937~56년 사망)의 작품에도 저작권료를 추가지급 해야 하며, 저작권 보호기간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작가들에게도 저작권료를 계속 지불해야 함
- 소유권과 달리 저작권을 제한한 것은 저작물이 인류공동의 자산이라는 인식에 바탕함.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창작권리를 고취시키는 한편, 일정 기간 이후에는 창작물을 공공 영역에 편입시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자는 것임

#### (4) 기술적 보호장치

- 한국은 2003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기술적 보호장치 관련 조항이 도입됨. 하지만, 이 중에서 미국법은 「접근통제적 조치」와 「침해방지적 조치」를 모두 포함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후자만을 포함하고 있음

##### 기술적 보호장치

- 기술적 보호장치는 암호화 등의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이나 장치를 의미하며, 보통 「접근통제적 조치」와 「침해방지적 조치」로 나뉨
  - 침해방지적 조치: 저작권의 원래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의 이용 금지  
ex) 음악파일의 인터넷 스트리밍 전송, 전자책의 출력 등
  - 접근통제적 조치: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은 그 자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암호화 기술을 통해 보호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  
ex) 외국 DVD나 PS 게임 CD의 지역코드 등

- 「접근통제적 조치」는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음

- ※ Adobe사는 Nikon 카메라의 raw 이미지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Nikon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했음
- ※ 미국 내 2위 프린트제조업체인 Lexmark사가 재생토너 이용을 위해 자사의 프린트와 레이저 토너 카트리지 사이의 승인 프로그램을 무력화하는 칩을 제조한 SCC사를 고소

- 기술적 보호조치의 도입은 권리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 이용 보장의 균형을 넘어서, 권리자가 임의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음

## (5) OSP의 책임강화

- 미국은 각국과 FTA을 체결하면서 온라인서비스(OSP)의 유형별로 면책규정을 다르게 규정하고,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혐의시 정보제공 의무를 OSP에 부과하였음
  - 권리자 확인을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권리자라는 진술만으로도 OSP가 권리침해자의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함
- 신상정보 공개를 통한 소송기능의 강조는 일면 타당하지만, 법원을 거치지 않고 권리주장자가 직접 OSP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우리나라처럼 형사소송이 민사소송보다 빈번한 나라에서는 부작용이 예상됨
- 인터넷 실명제가 일부 도입되었고, 온라인 상에서 필요이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 제공의 의무화는 네티즌의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 미국안을 일부 받아들여더라도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해야 하며, 개인이 직접 알아내기 보다는 법원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이 요구됨

**이슈 5**

**신약의 특허권 강화**

■ **신약 관련 미국의 주요 요구 내용은 크게 자료 독점권과 특허기간 연장으로 구성됨**

- 미국은 칠레, 싱가포르, 호주 등과의 FTA 협상에서 자료 독점권의 기간을 허가일로부터 5년까지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시켰고 특허 기간 연장 또한 싱가포르나 호주와의 FTA 체결시 요구했던 규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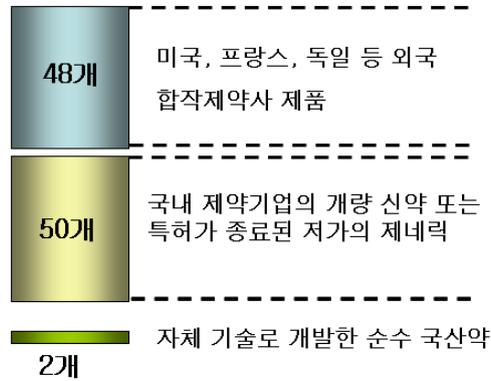
〈표 12〉 신약 관련 미국의 주요 요구사항

분야	주요 요구사항
자료 독점권	○ 신약 판매 허가를 위해 제출된 자료의 불공정한 상업적 이용 금지 - 국내 기업이 제네릭 제품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이미 제출된 유효성 및 안정성 자료를 활용할 수 없으며, 자체적으로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함
특허 기간 연장	○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한 활성, 안전성 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발생된 지연기간을 특허 기간에 포함시켜 3~5년의 기간을 연장

■ **자체 기술로 개발된 순수 국산약이 제약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신약의 특허권 강화로 인한 국내 기업의 이득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의사처방 100위권내 의약품 가운데 자체 기술로 개발된 순수 국산약은 동아제약의 위장관 치료약 ‘스티렌’과 SK케미칼의 관절염 치료제 ‘조인스정’에 불과
  - 매출액 기준으로 스티렌은 29위, 조인스는 89에 그치는 등 전체 매출에서의 비중은 3%에 불과

〈그림 2〉 국내 의사처방 100위권 내 의약품의 구성



※ 자료 : 국민건강공단

■ 자체적 신약 개발을 갖추지 못한 국내 제약회사들의 생존 기반의 약화가 예상됨

- 국내 제약회사의 극소수 상위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제네릭 개발에 의존하기 때문에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 환경이 까다로워질 경우 기업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품 출시 지연 및 수익 구조의 약화가 예상됨
- 미국의 요구안이 그대로 수용된다면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제네릭 약품생산시 자체적으로 유효성, 안정성 시험을 수행해야 하며, 특허 기간 연장에 의해 시장 진입시기가 지체하게 됨

■ 반면 미국 의약품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미국 시장 진출은 현실적으로 힘들

- 국내 제약업체 중 미국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생산기준을 만족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제약업체는 관세 장벽이 철폐되더라도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

■ 한국 정부가 사업 허가조건과 기술표준 설정 등을 통해 통신 분야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기술중립적 정책을 시행하고 무역 제한적인 표준설정 관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

- 미국은 한국 정부가 산업단체, 준정부 성격의 위원회와 허가조건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비판
  - 그 결과 WiBro 등 첨단기술을 가진 미국기업들이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시장에 도입하려고 할 때 저항에 부딪히는 일이 발생한다고 주장
- 궁극적으로는 한국정부가 표준이나 허가조건 설정시, 2개 이상의 기술을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을 것을 요구
- 반면, 한국은 기술표준의 선정문제가 합법적 정책목표로서, 정부의 정당한 고유권한임을 주장하고 있음

한국 정부의 WiBro 기술선택 사례

- 2004년 7월 한국정부는 WiBro라는 새로운 휴대용 무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하나의 표준만을 선택
- 2005년 1월 한국 정부는 3개 기업에게 WiBro 허가권을 주었고,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상용서비스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 시작함
- 미국은 한국 정부의 단일 표준 방침이 경쟁력있는 외국 제품들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함
  - 2005년에 몇 개의 미국 기업들만이 WiBro 관련 기술과 장비를 공급함에 따라 WiBro 시장의 진입에 있어서 제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이에 따라 미국은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2006년에는 다른 기술들이 WiBro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압박을 계속할 것임을 언급

**■ 복수기술 선택은 기존 통신산업 정책의 일대 전환을 초래할 것임**

- 한국의 IT 산업, 특히 통신산업은 정부의 전략적 기술선택을 통해 기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음
- 반면, 복수 기술 선정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 수용시, 향후 통신산업 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위축될 것이며, 기업 R&D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우리는 대응전략으로서 미국 연방정부, 주(州)정부, 시(市)정부 등의 독자적인 표준 운영으로 인한 한국기업의 대미수출 장애물 제거를 강하게 주장해야 함**

- 현재 미국에는 표준을 설정하는 기관이 700여 곳이며, 이들이 만든 표준만 93,000개에 달함. 각 기관별로 다른 표준들은 국제기준과도 다른 경우가 많아 한국기업이 수출하는데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 (외교통상부, 2006)

# 4

## 한미 FTA를 대응한 과학기술정책 추진방향

■ 3장에서 도출한 한미 FTA 관련 6대 과학기술정책 이슈에 대해서 본 절에서는 이에 대비한 정책추진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6대 이슈 모두가 이번 한미 FTA에 반영되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향후 다른 국가와의 FTA 및 무역분쟁 등에 대비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대비해야 할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그림 3〉 6대 과학기술정책 이슈 및 이에 대응한 정책추진방향



## 추진방향 1

## R&amp;D 지원대상의 특정성 배제

■ 정부 R&D 지원사업이 한미 FTA를 비롯한 WTO 보조금 지급규정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함

- 보조금 여부의 판단 기준 중 ‘수행주체’나 ‘편익발생’ 여부는 정부 R&D 지원사업이 피하기 힘든 관계로 ‘특정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구체적인 방향은 <표 13>에 제시된 바와 같음

<표 13> 특정성 배제를 위한 R&D 지원사업 추진 방향

특정성	R&D 지원사업 추진 방향
법률적 특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산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대신에 지원대상 산업의 기준만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지원조치의 적용 대상 산업이 특정되지 않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li> </ul> </li> <li>○ 또는 그 수혜대상을 규정시 기업의 규모나 자본금과 같은 객관적 수혜기준이나 조건을 정하면 법률상 특정성에서 벗어날 수 있음</li> </ul>
사실상 특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상 특정성은 그 수혜대상이 특정되지 않도록 명시하여 법률상 특정성을 벗어났더라도 시행과정에서 결과적인 특정성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li> <li>○ 특정 R&amp;D 사업 운영시 정부출연금이 특정 기업(군)이나 산업(군)에 편중되도록 하는 운영상의 주의가 요구됨</li> </ul>
지역적 특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R&amp;D 지원사업에서는 명시적인 지역적 특정성이 두드러진 것은 발견할 수 없으나, 사실상 운영과정에서 지역적 특정성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li> </ul>

■ 정부 R&D 지원사업의 지나치게 높은 출연금 비중을 낮추고, 투자 및 조세지원 등으로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

■ **기업에 대한 R&D 직접지원은 한미 FTA 뿐만 아니라 WTO에서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

- 이전까지는 R&D, 낙후지역개발, 환경기준 준수를 위한 정부지원이 WTO의 규제 대상 보조금에 해당되더라도 일정한 제한 하에서 5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음
- 그러나, 다수 개도국 회원들의 반대로 허용보조금의 연장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허용보조금 규정은 효력을 상실함

■ **반면, 서비스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현재 국제적으로 직접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임**

- WTO/GATS 체제하에서 서비스업의 보조금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서비스 보조금은 허용됨. 따라서, 서비스 보조금 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서비스 산업에 대한 R&D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아직 초기단계인 연구개발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 필요
  -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이 이에 해당

**외국의 연구개발서비스업**

- 미국은 1920년대에 이미 바텔연구소와 같은 연구개발업을 하는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는 등 다양한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가 활동 중
  - 「국가협동연구법」(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ct)에 의해 800여개사 등록
  - 연구개발용역전문기업(Contract R&D Company)과 산·학·연간 공동의 연구개발 합작기업(R&D Joint Venture)이 대표적
- 일본은 1990년대 초반이후 영리형태의 연구개발전문기업이 출현
  - 현재 200여개 업체가 활동 중이며, 이나리서치 (イナリサーチ), 도레이리서치센터 (東レリサーチセン-), 혼다기연 (本田技研) 등이 대표적

## 추진방향 3

## 산업규제 및 연구관리 제도 개선

### ■ 공공성을 훼손하는 외국의 투기자본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외국인 규제의 특징은 대부분 정량적 규제에 의존하며, 정성적 규제로는 공익성 심사가 있으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그 비중이 낮은 편임
  - 공익성 심사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는 아님
- 통신, 에너지 등 국가기반산업의 경우는 미국의 Exon-Florio법과 유사하게 외국의 투기자본이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시 투자효력을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

※ 현재 이를 반영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대표발의된 상태임

### ■ 한미 FTA로 인한 FDI 증가가 예상되나 국제기준이 통용될 수 있는 법·제도의 검토가 미흡한 상태임

- 유망분야의 국가 R&D 또는 그 성과물에 대한 FDI 확대를 위한 국가 R&D 사업관리 방안 및 기타 법령 등에 대한 종합적 점검 및 개정이 필요함
  - 외국인의 국가 R&D 투자 참여시 규정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프로그램별 참여조건, 지적재산권 소유 등을 고려한 제도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미국의 경우, 사업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참여제한 등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음

- 외국인이 소유한 첨단기술의 국내 상업화를 위한 국가 R&D 투자와 관련하여 신기술 지정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 필요

■ 한미 FTA를 비롯하여 한국 기술자력의 국제 통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공학교육을 워싱턴어코드(Washington Accord)의 정회원 수준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

- 워싱턴어코드의 정회원국이 되면 한국의 공대 졸업생들이 미국 기술사 시험을 칠 수 있고, 해외 취업에서도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미국은 인정·승인받은 공학교육을 워싱턴어코드 정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준회원인 우리나라는 2007년 정회원 자격을 얻을 것으로 예상됨
- ※ EMF(Engineers Mobility Forum)에서는 '워싱턴어코드에서 인정한 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질이 보증된 교육을 받았을 것'을 국제기술사제도의 기술사 표준자격 요건의 첫 번째로 규정

워싱턴어코드

- 1989년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 이렇게 6개국이 참가국이 되어 기술사의 상호인정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우선 자격요건의 하나인 공학계열 졸업자력의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
- 가입국
  - 초기 회원국 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1993), 홍콩(1995), 일본(2005), 싱가포르(2006)이 참가하여 총 10개국이 정회원임
  - 준회원으로는 독일(2003), 말레이시아(2003), 대만(2005), 한국(2005) 4개국 참여

■ 공학교육인증제도의 활성화는 공학교육의 전반적 수준 및 기술자력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인증작업시 민간의 우수 엔지니어의 참여를 활성화하며, 인증대학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 도모
- ※ 미국 정부는 인증을 받은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인증학과의 졸업생들에게만 전문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함

## 추진방향 5

## 국가차원의 지식재산 종합 조정·관리 강화

## ■ 범정부적 차원의 지식재산 종합관리의 효율성과 체계 구축 필요

- 지식재산관리기구(WIPO) 및 WTO 체제하 통합협정(TRIPs) 등 지식재산 제도의 변화와 국가간 지식재산 협력이 증대됨에 따라 대외적인 지재권 단일 협상 대응력 강화가 요구됨
-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인프라 조성 전과정의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일관성 있는 지식재산 정책 추진 필요
  - 2004년을 전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범정부 협의체에서 지식재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에는 산자부 특허청 등 일부 부처중심으로 지식재산 관리 정책이 추진되었음

## 미·일의 지식재산 행정체제 조정강화 추세

- 미국특허상표청(USPTO)은 산업재산권, 저작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주도하고, 국내외 지재권 통상정책에 대해 전문적으로 지원
- 미국은 '80년 이후 정부 R&D 성과인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관리를 강화(바이돌법)하고 지식재산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강화('05년 21세기 전략계획)
- 일본은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수상)를 창설('03)하고 지적재산입국을 목표로 범부처적 지식재산드라이브 정책 추진

## ■ 유망한 지식재산 창출 및 원천 특허의 확보를 위한 R&amp;D 강화 필요

- 소프트웨어, 신약 등에서 저작권 및 특허권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이들 부문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원천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됨
-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원천기술을 자체개발할 수 있는 연구기반 조성 마련
- R&D 성과물의 지식재산화(특허 출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정부의 공적표준 (de jure standard) 제도는 그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융복합화를 고려할 때 유효한 정책수단이 되기 힘든 측면이 강함

- CDMA를 비롯하여 정보통신 산업에 있어서 기존의 정부의 기술표준 선정은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개발의 불확실성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함
- 하지만,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융·복합화, 시장수요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주도의 기술표준 선정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한 정책수단이 되기 힘들

공적 표준과 사실상 표준

□ 공적표준(de jure standard)

- 공적 단체의 인증에 의한 표준으로서 국가표준 또는 국가간 협의에 의한 국제표준 등이 이에 해당

□ 사실상표준(de facto standard)

- 시장경쟁의 결과로서 나타난 사후적 표준을 지칭하는 것이며 시장주도표준이라고도 함

■ 정부의 기술선택을 현재의 공적 표준 방식보다는 대학과 출연(연) R&D의 전략적 지원을 통한 사실적 표준(de facto standard)방식으로 변경해야 함

- 정부는 중장기 기술로드맵에 의해 선택된 미래기술의 R&D를 대학과 출연(연)을 대상으로 집중지원함
  - ※ 대학과 정부출연(연)에 대한 기초연구의 지원은 그 '혜택(Benefit)'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음
-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대학과 출연(연)의 기초연구 성과가 자연스레 기업에게 이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은 이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응용, 개발연구를 통해 해당 기술의 제품을 생산
- 결국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 강요없이도 대학과 출연(연)을 통한 사실상 표준을 통해 전략적으로 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음

## 참 고 문 헌

1. 강하연 (2006) “한미 FTA 외국인지분 이슈검토”, 한·미 FTA IT협상 대비 제3차 토론회 발제자료.
2. 고은지 (2006), “한미 FTA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LG경제연구소 LG 주간경제.
3. 고준성 (2005), “WTO 체제하에서 국가 R&D정책의 운영 방향, 산업연구원 산업 경제분석.
4. 외교통상부 (2006), “2005년 외국의 통상환경.”
5.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 “한미 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6. 정재화 (2006), “한미 FTA에 대한 산업계 입장”, 미래전략연구원 이슈와 대안
7.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미 FTA와 기술자격의 상호인정”.
8. 한국무역협회 (2006), “한미 FTA와 제조업”, 한국무역협회.
9. 한국산업연구원 (2005), “한미 FTA 통신서비스 개방 영향분석”.
10.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2006),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출범 선언문”,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11. USTR (2006), “2006 Trade Policy Agenda and 2005 Annual Report”, USTR.
12. 한국공학교육인증원, <http://www.abeeek.or.kr/>

## ▣ 저 자 프 로 필

### ▣ 백 철 우

- 現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원
- 서울대학교 공학학사 ('99)
- 서울대 기술정책대학원과정 경제학 박사('07)
- 연락처 : 02) 589-2938, yorke@kistep.re.kr

### ▣ 손 병 호

- 現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혁신경제팀장
- KAIST 산업경영학 박사('99)
- 미 조지워싱턴대 방문연구원 ('03-'04)
- 연락처 : 02) 589-2213, bhson@kistep.re.kr

### kistep Issue Paper 2006-05

---

2006년 9월 인쇄

2006년 9월 발행

발 행 인 유 희 열

발 행 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 02) 589-2200, 팩스 : 02) 589-2222

<http://www.kistep.re.kr>

組 版 및 미래미디어

印 刷 TEL : 02)572-4047 / FAX : 02)2057-8445

---